편집자 주 –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가주소·가명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한 취재 범위를 벗어난 사생활 공개 관련 조정신청 (손해배상 조정결정)

김○○ 씨(신청인)는 KBS-2TV 「8시 뉴스 타임」이 자신이 동의한 취재 범위를 넘어 개인적 내용까지 방송을 통해 보도하자 해당 방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김 씨는 사회적 기업인 ○○○○에서 제공하는 장학제도를 통한 창업교육을 받던 중 해당 프로그램의 인터뷰 제의를 받고 장학제도 참여의도와 관련된 인터뷰만을 허락하였으나, 방송은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내용 등의 사생활까지 공개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신청인 방송사는 ○○○○의 강○○ 대표로부터 인터뷰 대상으로 신청인을 추천받아 취재하였으며, 사생활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를 원한다는 말을 들은 바 없다고 반론했다.

중재부는 이에 대해 피신청인이 사생활 공개와 관련해 명시적인 동의를 받았음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 과실이 인정된다며 3백만 원을 신청인에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6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KBS-2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3.
처리결과 : 조정결정

보도내용

KBS-2TV : 「8시 뉴스타임 – 서민의 희망 '무보증 소액 대출'」 프로그램 (2009년 1월 9일)

내 용 : 〈앵커〉 오죽 도움이 청할 곳이 없으면 사채업자에게 손을 벌리셨을까, 안타까운데요.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불량자나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무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마이크로크레딧' 즉 무보증 소액대출 제도가 어려운 이들에게 자활의 불씨를 지펴주고 있습니다. 홍○○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략) 기초생활수급자로 12년째 혼자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김○○ 씨도 여기서 재기의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어려운 환경에서 배움이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에서 장학제도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기회가 너무나 크고요. 업그레이드된 기회를 얻으려고 참여하게 됐어요.

〈리포트〉 국내에서 무담보 소액대출 제도를 운영 중인 곳은 신나는 조합과 사회연대은행이 대표적입니다. 일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연리 2~4%로 빌려주는데 지금까지 1,200여 명에게 17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6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주 문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9년 3월 13일까지 금 3,0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신청인에게 위 금원에 대한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이 위 1.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본건 조정대상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소속 임직원에 대한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보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20.

조정결정 이행결과

<손해배상액 지급>

환경부의 지방 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관련 조정신청 (반론보도 합의)

환경부(신청인)는 시사주간지 한겨레 21의 '운하 닦는 포항 상수도 광역화' 제하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했다.

환경부는 한겨레 21이 "미리 상수도를 광역화 · 민영화 해 취 · 정수장 이전 문제를 일괄적으로 정리한다면 정부로서는 운하의 걸림돌 하나를 손쉽게 해치우는 셈이 된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지방 상수도 통합운영은 지난 10여 년 동안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제안되어 온 지방 상수도 경영효율화 방안의 하나이며 운하사업과는 상관없는 일"라고 주장하며 정정을 요구했다.

피신청인 언론사는 그러나 환경부가 작성한 기존의 각종 문건들을 종합하면 포항시가 시범사업 대상으로 미리 낙점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중재부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건을 해석하는 시각차에 의한 문제로 판단, 반론보도가 적당할 것이라 제안하였고,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반론보도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6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피신청인 : 한겨레신문(한겨레 21)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26.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한겨레21 : 『운하 닦는 포항 상수도 광역화』 제하의 기사(2009년 2월 16일자 48~49면)

내 용 : '(상수도 민영화+광역화)×4대강 정비사업=한반도 대운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자신의 대표 공약인 대운하를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지만, 강과 물을 관리하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계획 곳곳에선 '삽질'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특히 '한반도 대운하'의 당초 모델이던 경부운하 구간 낙동강 주변 지역에선 상수도 민영화와 상수원 이전에 점점 속도를 내고 있다. 상수도 민영화에서 쉽게 운하가 연상되지는 않지만, 두 사업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마치 퍼즐 조각처럼 아귀가 들어맞는다. (중략)

포항시는 시범사업 참여를 검토했고, 지난해 12월 경북 경주 · 울진 · 영덕 · 영천 등과 함께 포항권역으로 묶여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앞선 지난해 5월 20일 환경부가 작성한 '통합관리권역 효과분석(포항권역)'이란 회의 자료를 보면, "시범지역인 포항권을 대상으로 통합관리권역 효과분석(안) 수립"이란 대목이 나온다. 포항권이 미리 낙점돼 있었던 셈이다. 이를 두고 환경부 물산업육성과는 "행안부에서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포항시 쪽이 먼저 찾아와 환경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포항시는 "경영개선 명령의 세부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통합운영 방안을 제시해왔다"고 밝혔다.

양쪽의 엇갈리는 주장에 대해 강호철 '포항시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 · 물 공공성 확대를 위한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포항권을 찍어 상수도를 광역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추정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운하 닦는 포상 상수도 광역화'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지난 2월 16일자 <한겨레 21> 표지이야기 코너에서 "운하 닦는 포항 상수도 광역화"라는 제목으로 환경부가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포항을 미리 낙점해 두고 동 지역의 용수수급 전망을 갑자기 변경하여 포항이 대상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낙동강 정비사업과 더불어 취 · 정수장 이전 문제를 쉽게 하여 운하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환경부의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은 운하사업과 무관하게 오래 전부터 추진되어 온 정책으로서 취 · 정수장 이전을 전혀 고려하고 있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포항의 용수수급 전망이 변경된 것은 2008년도에 본격적인 통합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6년 급수체계 조정 기본계획 수립 당시와 달라진 여건을 고려하여 인구증가 추세와 신규 개발계획 수요를 감안하여 재산정한 결과이며,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자치단체에 대한 수요조사와 사업설명회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자치단체의 의사를 반영하여 최종 선정된 것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상수도 광역화 관련 반론

• 내 용 : 본지 2009년 2월 16일자 48~49면 『운하 닦는 포항 상수도 광역화』 제하의 기사에서 환경부가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포항을 미리 낙점했으며, 포항의 용수수급 전망을 물 부족 지역으로 갑자기 변경한 것은 낙동강 정비사업과 더불어 운하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포항을 사전에 낙점한 것이 아니라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선정된 것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또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사업은 인근 자치단체 간 과부족 용수를 연계 공급하여 예산낭비를 막고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취지의 사업으로 운하와 무관하게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해온 것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21 : 『상수도 광역화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2009년 3월 23일자 제752호 8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미네르바는 7인의 그룹이라는 보도 관련 중재신청 (사과보도 중재화해결정)

인터넷에서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 씨는 월간 신동아가 미네르바는 7인의 그룹이며 자신은 그 중 한 명이라고 주장한 K모 씨의 인터뷰를 보도하자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청구를 했다.

박○○ 씨는 피신청인 언론사가 K모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네르바는 금융계 출신 7인 그룹이며, 자신이 주 집필자이고 신청인은 자신들과 상관없다고 한 내용 등을 보도하자 "이는 사실이 아니며 다음 아고라를 통해 논란이 된 글들을 올린 미네르바는 자신이 맞다"며 이를 정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 과정에서 조정신청을 중재부의 판단을 구하는 중재신청으로 변경 했으나, 중재과정 중 사과보도를 하기로 합의하였고, 중재부는 이를 받아들여 양측이 합의한 대로 중재화해결정을 내렸다.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3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신동아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10.
처리결과 : 중재화해결정

보도내용

신 동 아 : 1. 『'인터넷 경제대통령' 미네르바 절필 선언 후 최초 토로』 (2008년 12월호)
2. 『미네르바는 금융계 7인 그룹 박○○은 우리와 무관』 (2009년 2월호)
내 용 : 2. (전략) 박 씨는 "신동아에는 기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씨의 발언이 알려지자 일부에서는 "신동아는 가짜 미네르바에 속았나"는 식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신동아는 어떤 식으로든 미네르바의 실체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중략) 며칠간의 끈질긴 설득에 K씨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대신 그는 까다로운 조건을 걸었다. 편집실과의 조율 끝에 인터뷰어인 편집장 외 기자 1명이 기록자로 동석한 대면 인터뷰에서 핵심 신상정보와 몇 가지 증거를 공개하는 대신 기사에는 이름은 성의 이니셜만 밝히고 나이, 직업, 키, 학 · 경력, 사진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K씨는 나이 공개를 끝까지 양보하지 않았으나 신동아에 실명을 밝혔다. 신동아는 또 K씨가 언급한 지인을 통해 K씨의 직장 등 구체적인 신원도 확인했다. K씨와의 인터뷰는 7시간 동안 진행됐다.

• '미디어다음 아고라'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글을 쓴 것으로 지목돼 구속된 박○○ 씨를 압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 아고라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글을 썼습니까?
"네" (중략)

•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그 많은 글을 혼자서 다 썼다는 말입니까? "모든 글을 저 혼자 쓴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글도 있습니다. 직접 쓰기도 하고, 제가 데이터를 모으면 다른 사람이 그 데이터에 기반해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글의 포맷은 함께 잡았고요. 언론사의 시스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외국 웹사이트에 나온 정보만 이용해서 글을 쓰지는 않습니다. 우리 글에는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습득한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대표 격인 사람은 저를 포함해 2명입니다"

• 그렇다면 미네르바는 한 명이 아니라 일종의 그룹인 셈이군요. "모두 7명입니다. 팀으로 움직였으니 일단 동호회라고 해두지요"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신동아)는 2008년 12월호 및 2009년 2월호에서 "K모 씨가 7인 그룹을 형성하여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2008년 3월부터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 경제방에 208여 편의 경제관련 글을 2009년 1월 초순경까지 올린 사실이 있고, 그 글 중에서 2008년 9월 10일 리먼브라더스의 파산과 환율폭등 및 경기침하 예측 등의 글이 널리 알려져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이 크게 명성을 얻었다"라고 보도한 것은 전적으로 사실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진실은 신청인이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2008년 3월부터 211.178.로 시작되는 아이피 주소를 사용하여 신청인의 아이디로 위 기간 중 208편의 글을 위 토론방에 올렸고, 크게 명성을 얻은 미네르바는 바로 신청인입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드립니다.

• 내 용 : 신동아는 2008년 12월호 및 2009년 2월의 미네르바 진위논쟁 보도와 관련해 현재 이 사건 당사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씨에게 정신적 상처를 입힌 데 대해 심심한 위로와 더불어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3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신동아)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1 기재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신동아 2009년 5월호(2009. 4. 17. 발간 예정) 「말길 글길」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말길 글길」면의 통상의 제목 크기 이상으로 하고, 본문활자 크기 및 줄간격은 중재대상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2. 신청인은 이 사건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더 이상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 신동아 표지면 상단에 상자기사로 "미네르바 K는 가짜로 판명되었다. 박○○ 씨에게 사과한다"를 게재하고,

2. 목차에 2008년 12월호 및 2009년 2월호의 제목활자크기로 "박○○ 씨에게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을 기재하고,

3. 본문에 〈별지2〉 기재의 보도문을 게재한다.

결정이유 : 피신청인 신동아는 2008년 12월호 및 2009년 2월호에서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경제관련 글을 게재하여 명성을 얻은 사람이 K씨라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이 위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중재신청을 하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별지3 기재와 같은 합의가 성립되었고 그 합의대로 중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13.

〈별지 2〉〈합의사항 참조〉

중재화해결정에 의한 보도문

신 동 아 :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5월호 607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가수 비의 '월드 투어' 무산에 대한 미국 판결보도 관련 조정신청 (반론보도 후 취하)

정지훈 씨(예명 : 비)와 소속사인 제이튠엔터테인먼트는 통신사 뉴시스가 정 씨의 월드 투어가 무산된 책임을 다툰 미국 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도하면서 "비 측의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 800만 달러 이상을 배상해야하나 이를 지불할 능력이 비에게는 없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자, 이는 전체적 사실과 다르고 이로 인해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며 정정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했다.

이에 피신청인 언론사는 손해배상을 혼자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고, 비의 현재 재산 상황으로는 손배 지불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비 측 변호사가 재심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낮고 항소 자체도 안 된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조정 과정 중 양 측은 반론보도를 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고 반론보도가 나간 뒤, 신청인이 해당 사건을 취하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15
청 구 명 :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정 지 훈 (예명 : 비)
제이튠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피신청인 : 뉴시스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2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뉴 시 스 : 『가수 비 항소불가 · 줄소송, 지불능력도 없고?』 제하의 기사 등 (2009년 3월 22일자)
내 용 :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배심이 2년 전 가수 비의 '월드 투어' 무산과 관련, 19일 비와 당시 비의 소속사인 JYP 엔터테인먼트에게 808만 6000달러(약 112억 원)의 손해배상을 평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480만 달러(비 · JYP 각 240만 달러), 사기피해 100만 달러(약 13억 9150만 원), 그리고 계약위반으로 228만 6000 달러(약 31억 8096만 원)를 내라는 것이다.

2007년 6월 21일 클릭엔터테인먼트(대표 이승수)는 비의 월드투어 파행 책임을 물어 비와 JYP를 연방법원에 고소했다. (중략) 비 측은 "이번 배심원들의 평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배심원 평결에 대한 항소심은 쉽지 않다. 항소가 받아들여질 확률도 거의 없다. 사실상 재판이 끝났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비의 항소가 받아들여지려면 소송 절차와 판결의 공정성, 재판장의 개입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승소할 확률도 없다시피 하다. 배상금액이 줄어들 여지가 없는 것이다. 걸림돌은 더 있다. 항소가 수용된다 해도 미국 연방법원에 1500만 달러(약 210억 원)를 내고 쿠폰을 사야한다. 일종의 공탁금이다. 이 항소가 기각되면 1500만 달러는 클릭이 갖게 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비, '항소 불가'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3월 22일자 연예면에 "가수 비 항소불가 · 줄소송, 지불능력도 없고?"라는 제목으로 보도됐던 내용과 3월 23일과 24일 각각 "가수 비 100억대 청담동 건물 가압류", "가수 비 건물 가압류, 국내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됐던 내용이 사실과 달라 바로 잡습니다.

먼저 22일자 기사에 따르면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배심이 (중략) 비와 전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게 808만 6000달러의 손해배상을 평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중략) 사기피해 100만 달러(약 13억 9150만 원), 그리고 계약위반으로 (중략) 내라는 것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비와 JYP 엔터테인먼트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아니며, 그 중 비(본명 정지훈)가 부담하는 금액은 약 420만 달러에 불과하고, 배상액 항목 중 1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기피해'에 대한 금액이 아닌 '계약위반에 따른 위자료'로서 이번 손해배상 판결은 '사기죄 기타 형사적 처벌'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또한 '항소가 받아들여질 확률도 거의 없다. 사실상 재판이 끝났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이다'라고 보도한 내용 역시, 상소는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정된 권리이며, 상소의

결과는 '법률전문가'의 소견으로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닌,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판단에 달린 것입니다.

'항소가 수용된다고 해도 미국 연방법원에 1500만 달러(약 210억 원)를 내고 쿠폰을 사야한다'고 보도한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며, 여기에서 '쿠폰'은 우리나라 민사소송절차에서 정하고 있는 '강제집행정지 공탁금'의 성격으로 항소 제기를 위한 조건도 아니며, 금액이 확정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공탁을 해야 하는지 조차도 정해진 바 없습니다.

비 측은 '여러가지 방안을 (중략) 특히, 비는 사기죄 판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중략) 토로했다'라고 기재한 내용은 비나 청구인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언급을 한 사실이 없으며, '사기죄'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23일 및 24일 보도에서는 '비와 당시 비의 소속사인 JYP 엔터테인먼트에게 808만 6000 달러(약 112억 원)의 손해배상을 평결했다. 여기에 변호사 비용 (중략) 배상총액은 900만 달러(약 126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지만, 평결 내용에 변호사 보수를 부담하도록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23일, "가수 비 100억 대 청담동 건물 가압류"라는 제목으로 '가수 비(정지훈)의 것으로 알려진 서울 청담동 100억 원대 건물이 가압류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지훈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진행된 바 없고, 가압류는 채권자의 의사판단, 관할 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에도 가압류가 임박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여 비의 재정상태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10일 한국신용정보는 (중략) 투자자들의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으나, 제이튠엔터테인먼트는 피소 대상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기사에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을 삽입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하였습니다. 제이튠은 구 세이텍을 인수한 후 사업 분할매각 및 구조조정을 통해 재무구조가 많이 개선된 상태임에도 1개월 전 외부기관 언급만을 인용, 회사가치 하락을 조장하고, 투자자들 심리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사를 바로 잡으며, 가수 비와 소속사의 연예활동 및 소속사의 향후 사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비와 소속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신청 후 보도문

• 제 목 : 알려드립니다.

• 내 용 : 위 보도에서 언급된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배심의 평결에 대해 비(본명 정지훈) 소속사 제이튠엔터네인먼트는 비와 당시 비의 소속사인 JYP 엔터테인먼트가 808만 6000달러의 손해배상 평결액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중 비가 부담하는 금액은 최대치로 보아도 약 420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항소가 받아들여질 확률이 거의 없고 항소가 수용된다고 해도 미국 연방법원에 1500만 달러를 내고 '쿠폰'을 사야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비는 항소는 누구에게나 인정된 권리이고 '쿠폰' 역시 항소 제기를 위한 조건이 아니며, 보도 내용과는 달리 현재 항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소속사 임직원 중 어느 누구도 비가 사기죄 판정을 받았다고 인정하거나 비의 심경에 대해 위와 같은 내용을 언급한 사실이 없으며, 위 기사에서는 '사기피해'라고 언급했으나 실제 평결의 내용은 '계약위반에 따른 위자료'의 개념에 가깝다고 밝혀왔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기사에 잘못 인용된 취재원 관련 중재신청 (손해배상 중재결정)

유○○ 씨는 한국경제신문이 국회의원 관련 선거 기사를 내보내면서, 다른 사람과 인터뷰한 내용을 자신이 한 것으로 인용하여 보도하자, 이로 인해 자신의 영업 관련 피해는 물론,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받았다며 정정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했다.

피신청인 언론사는 지난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보도를 통해 공인중개업을 하는 유 씨가 자신의 지역구에 정동영 후보가 출마하는 것과 관련 "이제는 젊고 참신한 인물을 키워야 한다"며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 피신청인은 기사 작성과정의 실수임을 인정, 신청인과 함께 중재부의 결정에 따르는 중재신청을 하기로 합의했다. 중재부는 피신청인에게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금 2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39
청 구 명 :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유 ○ ○
피신청인 : 한국경제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9. 4. 17.
처리결과 : 각 중재결정

보도내용

한국경제 : 『輿 견제하려면 스타급 정치인 필요』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6일자 A8면)

내 용 : (전략) 지난 4월 이곳에서 만난 주민들은 정 전 장관이 아직까지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있어서인지 "일단 지켜보자"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속내는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정 전 장관 같은 스타급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쪽이 우세한 편이었다.

진북동 주민 박○○ 씨는 "어디서 달든 국회의원은 똑같은 거 아니냐"며 "한나라당의 독주를 견제하려면 정동영 같은 거물이 국회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략)

반면 민주당의 '세대 교체'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 전 장관의 출마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도 없지 않았다. 진북동 공인중개사 유○○ 씨는 "민주당도 언제까지 정동영으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이제는 젊고 참신한 인물을 키워야 한다"고 세대교체론을 제기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지난 2월 6일 저희 신문사는 "정동영 출마설 전주 민심은, 輿 견제하려면 스타급 정치인 필요"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공인중개사 유 씨가 "민주당 언제까지나 정동영으로 갈 수 없는 것 아니냐, 이제는 젊고 참신한 인물을 키워야 한다"는 내용의 세대교체론을 제기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이는 다른 이의 발언으로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잘못된 보도로 인해 피해를 보신 유 씨와 관계자분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결정문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39
청 구 명 :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유○○
피신청인 : 주식회사 한국경제신문사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발행하는 한국경제의 정치면에 상자기사로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1회 게재하되, 제목과 본문의 활자 크기 및 서체는 이 사건 중재대상기사의 부제목(정동영 출마설 전주민심은) 및 본문 활자와 각각 같게 한다.

2.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한국경제 2면 상단에 〈별지2 〉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2. 피신청인은 한국경제(http://www.hankyung.com/)의 초기화면과 정치기사란(http://www.hankyung.com/news/app/newslist.php?=010610&nid=00_6&type=1) 중앙 중단부에 별지2 기재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10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고 그 이후에는 조정대상 기사의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백만 원을 지급하라.

결정이유 : 피신청인 주식회사 한국경제신문사는 이 사건 기사에서 신청인이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전주 덕진구 재보선 출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위 보도와 같은 견해를 밝힌 사람은 신청인이 아니라는 사실, 피신청인이 인터넷 홈페이지 한경 닷컴) 기사를 수정한 사실,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17.

중재결정에 의한 보도문

한국경제 : 『전주시 유○○ 씨 견해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4월 25일자 A6면)

내 용 : 〈중재결정문 중 별지1 참조〉

〈별지 1〉

• 제 목 : 전주시 유○○ 씨 견해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보는 지난 2월 6일자 A8면에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전주 덕진구 재보선 출마에 대한 지역 여론을 전하면서 진북동 공인중개사 유○○ 씨가 정동영 전 장관의 출마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 씨가 아닌 다른 주민의 견해였던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별지 2〉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대한민국 스타강사들 - 이래서 사교육이다' 프로그램의 몰래카메라 취재 관련 조정신청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합의)

현○○ 씨는 자신이 상담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학원에 피신청인 언론사의 취재진이 신분을 학부모로 위장해 찾아와 상

담을 하면서 자신의 동의 없이 몰래카메라 형식을 통해 촬영한 상담 내용을 방송으로 방영하자,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발언 의도도 왜곡되었다며 정정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피신청인 언론사는 해당 방송은 사회적 공익을 위한 취지의 프로그램이고, 신청인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한 모자이크 처리 등의 노력을 하였으며, 신청인의 의사를 왜곡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신청인 언론사는 취재 및 방송내용에 대한 일부 문제점을 인정,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하기로 신청인과 합의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33
청 구 명 :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현 ○ ○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KBS - 1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26.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KBS-1TV : 「추적60분 - '대한민국 스타강사들 - 이래서 사교육이다」 프로그램 (2009년 3월 20일)
내 용 : (전략)

<리포트> 최근에는 특목고 열풍이 몰아닥쳐 자녀를 특목고에 보낸 엄마들도 인기입니다. 이 학원은 외고생 아이를 둔 엄마가 상담실장으로 있습니다.

<현장음> (여) 실장님 자녀분도 대원 갔다고요? (실장) 청심에 갔다가 대원을 갔고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영어는 최대한 따로 개인적으로 올려놓고 수학은 놓치면 안 되고, 그 상태에서 기본을 가져가는 거예요.

<리포트> 그녀 역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입시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는 고액의 그룹과외를 추천했습니다.

<현장음> (실장) 가격으로 말씀드리면 (과목당) 200, 200, 200. 600(만원) 정도는 한 달 값(교사월급)이 된단 말이에요. 열 명씩 모여가지고 팔십만 원, 백만 원 정도

<리포트> 특목고 열망이 강한 엄마라면 뿌리치기 힘든 제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3월 20일자 '대한민국 스타강사들 - 이래서 사교육이다' 방송 내용 중 모 입시컨설팅학원 및 상담실장을 방송함에 있어서 몰래카메라로 학원 및 실장의 동의 없이 촬영하여 방송하였으며, '고액 그룹과외를 추천했다'는 부분 역시 출연자의 생각이나 실제 발언과는 전혀 달리 제작진의 의도대로 방송되었음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에 방송에 의해 피해를 입으신 학원 관계자의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1. 보도문
• 제 목 : 밝혀왔습니다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3월 20일 '대한민국 스타강사 - 이래서 사교육이다' 제하의 보도에서 입시컨설팅학원의 모 상담실장이 고액 그룹과외를 추천하는 내

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모 상담실장은 고액 그룹과외를 추천하지 않았으며, 내용 중 일부가 동의 없이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방송되었다고 밝혀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2009년 4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배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KBS-1TV : 「추적 60분」 프로그램 (2009년 4월 24일)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손해배상액 지급>

김상희 의원의 '언론인 성매매 예방 교육' 발언 관련 조정신청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조정결정 - 피신청인 이의신청)

김상희 의원은 자신이 국회 여성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도한 조선일보가 자신의 발언 의도를 왜곡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지 않은 발언을 자신이 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정정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했다.

피신청인 언론사는 이에 대해 국회 의정 발언을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며, '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이라는 내용은 신청인의 '언론인 성매매 예방교육' 주장에 대한 주관적 표현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중재부는 내용 중 일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피신청 언론사는 반론보도를 싣고 손해배상액 2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 해당 사건은 법원에 자동 소제기 되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50
청 구 명 :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상 희 (국회의원)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2. 26.
처리결과 : 각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보도내용

조선일보 :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언론을 향한 '성폭행적 폭언'』 제하의 사설 (2009년 4월 15일자)
내 용 :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여성위원회 회의에서 여성부 장관에게 "지난번 성매매 단속된 사람 중에서 언론인이 몇 명인가"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장자연 씨 자살사건을 거론하면서 장관에게 "현재 성매매 방지와 관련한 교육은 공무원에게만 강제하고 있는데 언론사에도 성매매 예방교육을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여성부에서 언론기관도 성매매 예방 교육을 강제하는 방안을 발의해보라"고도 했다. (중략)

김 의원 이력서에는 여성운동 경력이 길게 나열돼 있다. 여성운동가 김상희 씨가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2003년 4월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 · 지방분권 위원회 위원, 그해 6월엔 정연주 씨가 사장으로 있던 KBS의 이사에 임명됐다. 그러더니 2006년 1월엔 장관급인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직 출세를 했고, 위원장 임기가 끝나자 이번에는 열린우리당이 간판을 바꿔 단 대통합민주신당의 최고위원직에 올랐다. 말하자면 김 의원은 노무현 정권 탄생과 함께 정치 무대에 떠오른 '노무현 사람'이다. 그 사람 입에서 '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이라는 폭언이 나온 것이다. "기자들에게 소주 사봐야 득될 게 없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실한 상품이 미디어"라는 식으로 5년 내내 언론을 폭행하던 '노무현 대통령 사람'답다. 김 의원은 무명의 자신을 졸지에 장관급 자리까지 발탁해주었던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지금 언론인들의 얼굴에 오물을 던져대고 있는 것인가.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국회 발언 진의 왜곡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009년 4월 15일자 사설에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언론을 향한 '성폭행적 발언'"이라는 제목으로 김 의원이 국회 여성위원회에서 언론사의 성매매 예방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발언함으로써 언론인들에게 언어 폭행을 했다고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그 사람 입에서 '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이라는 폭언이 나온 것이다"라는 부분은 김 의원이 실제 발언한 바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국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만 시행하는 '성매매 예방교육'을 '성희롱 예방교육'처럼 언론사를 포함한 기업까지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고, 이에 장관도 동의하며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설에서 "김 의원은 정상적 의원으로서, 정상적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었다"라는 표현과 "김 의원이 결혼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다", "'노무현 대통령 사람'답다", "김 의원은 무명의 자신을 졸지에 장관급 자리까지 발탁해주었던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지금 언론인들 얼굴에 오물을 던져대고 있는 것인가" 등의 내용은 여성위원회 해당 발언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서 김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모욕한 점이 있기에 사과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150
청 구 명 :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상 희
피신청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주 문 : 1. 피신청인은 아래 보도문을 2009년 5월 22일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오피니언면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조선일보의 통상적인 '반론보도문' 제목활자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 및 줄간격과 동일하게 한다.
1) 제 목 : 김상희 의원 관련 반론

2) 내 용 : 본지는 2009년 4월 15일자 A35면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언론을 향한 '성폭행적 발언'』 제하의 사설에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국회 여성위원회 회의에서 '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이라고 폭언했다고 보도했으나,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회의 당시 '성매매 예방교육을 언론사에까지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언했을 뿐 '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9년 5월 22일까지 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1.항 및 3.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4.

조정결정 이행결과

<피신청인 이의신청으로 법원 자동 소제기>